

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강 동 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, 청소년쉼터의 설치·운영,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(안 제3조),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,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7조 및 제8조)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발굴·지원하고 쉼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가출청소년을 예방하며, 가출청소년들이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